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양상과 대처방안*

Aspects of Intellectual Freedom Restrictions in Libraries and Countermeasures

김 신 영 (Sin-Young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최근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조사·분석 | |

요약: 본 연구는 최근 국내 도서관계에서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의 다양한 행태를 분석하고 현장 사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전문가 단체의 관련 선언문에 나타난 도서관 지적자유 정의와 선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나다움어린이책의 선정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등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사서를 대상으로 소속 도서관에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와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별 도서관 차원의 대응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협회·전문가 단체 차원의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 향후 지적자유 보장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상황이 복잡·다양한 가운데 협회·전문가 차원의 성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도서관 현장에서 상황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의 작성도 시급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협회·전문가 단체,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지적자유, 검열, 장서관발, 자료선택, 금서, 나다움어린이책, 성교육 도서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various recent aspects of intellectual freedom restrictions in the domestic libraries, identifies difficulties facing librarians in the field, and suggests countermeasures. Specifically, we conducted literature research, including the definition and declaration of library intellectual freedom in core documents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 groups, the background of selection of 'Nadaum Children's Book', which is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and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Next, we investigated the patterns of intellectual freedom restrictions committed in libraries, difficulties encountered in the field, and cases of response at the individual library level among librarians. In addition, we surveyed the level of perception in the field about countermeasures against intellectual freedom restrictions at the level of associations and expert groups and future plans to guarantee intellectual freedom. Finally, based on this, countermeasures against restrictions of intellectual freedom were proposed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Library Committe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sociations and expert groups, and individual libraries.

KEYWORDS: Intellectual Freedom, Censorship, Collection Development, Book Selection, Banned Books, Nadaum Children's Book, Sexuality Education Book

* 이 연구는 2022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nyoung@daegu.ac.kr / ISNI 0000 0004 7390 3462)

- 논문접수: 2024년 5월 17일 • 최초심사: 2024년 6월 4일 • 게재확정: 2024년 6월 4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2), 189-217, 2024. <http://dx.doi.org/10.16981/kliiss.55.2.202406.189>

* Copyright © 2024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지금까지 도서관은 모든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도서관 및 사서직의 권리선언에 입각해 자료를 수집·제공해 왔다. 하지만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의 지적자유사무국(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OIF)에서 발표한 2023년 ‘도전받은 책(challenged book)’은 전년 대비 65%나 급증하여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수치를 기록하였다(ALA, 2024). 도서검열뿐만 아니라 매체별 자료와 서비스, 도서관 프로그램과 공간에 이르기까지 도서관 지적자유와 관련된 이슈는 확대되고 있다. 각국은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 채택과 갱신, 관련법 제정, 출판계와 연대협력 등을 통해 도서관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계의 지적자유 침해 양상은 미국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특정 단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선정·보급한 ‘나다움어린이책’을 비롯한 일부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요구하는 민원을 도서관 현장, 국민신문고, 상위기관 등을 통하여 접수하였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부서장, 기관장, 지자체장 등 상위기관의 명령이나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자료를 검색 배제, 이용불가 처리, 이관, 제적하는 등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반하는 요구로 인해 전문직 사서의 자료선정권이 침해되고 자기검열로 이어지고 있다. 도서관은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도서관법」에 명시된 내부 위원회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선정·수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현장에서는 책임자나 수서 담당 사서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외압은 「도서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국민의 지적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설로 존재하는 도서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도서관계도 우려를 표한 바 있다. 2023년 7월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여러 관점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도서관과 사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한 채 자기검열 형태로 특정 도서를 배제할 수 없고, 도서관 밖의 누구도 도서관의 자료선정과 수집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언론, 출판, 예술 등에 대한 검열이 자행되었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지적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당대에 금서로 지정되었던 무수한 고전이 재평가된 사례가 이를 방증하며, 도서관은 현재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한 지식정보자원의 보존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국내 도서관계에서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의 다양한 행태를 분석하고 현장 사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전문가

단체의 관련 문건에 나타난 도서관 지적자유 정의와 선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나다움어린이책의 선정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등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현장 사서를 대상으로 소속 도서관에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 양상 및 현장의 애로사항, 개별 도서관 차원의 대응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협회·전문가 단체 차원의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 향후 지적자유 보장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끝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협회·전문가 단체,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대처방안을 제안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적자유 정의와 선언

최근 도서관 지적자유 개념은 도서검열을 넘어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필터링, 도서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도서관 폐쇄, 테러 위협 등), 도서관 공간,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료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있다. 도서관계는 지적자유 침해와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지적자유 정의를 조금씩 수정·확장해 왔으며, 이는 변화된 여건과 상황에 비추어 지적자유를 해석하여 그 한계를 재정의하고 폭넓게 대처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자유 이념적 토대는 검열에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

먼저 비교적 일찍부터 지적자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미국은 사서직의 실천윤리이자 학술연구의 주체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독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그 개념을 확장해 왔다. 지적자유에 대한 미국 도서관계의 입장은 「도서관 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 「윤리강령」(Code of Ethics), 「독서의 자유선언」(Freedom to Read), 「도서관: 미국의 가치」(Libraries: an American Value)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각 핵심 문건에 제시된 지적자유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Garnar, 2021).

1930년대 확산된 사상통제 및 검열에 대응하기 위하여 ALA는 1939년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1944, 1948, 1961, 1967, 1980, 1996, 2019)을 거쳤는데, 특히 1996년 개정문에서는 ‘나이(age)’를 포함하여 재승인되었다. 2019년 최종 개정된 선언문에는 창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 견해 때문에 도서관 자료에서 배제해서는 안되며, 개인의 도서관 이용 권리는 출신, 나이, 배경, 견해 등을 이유로 거부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39년 발표된 「윤리강령」(1981, 1995, 2008 개정)에서도 사서는 지적

자유와 정보접근의 자유에 헌신하는 전문직으로서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여 도서관 지적자유를 옹호하는 ALA의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후 1953년 ALA 평의회와 미국출판협회 독서자유위원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Freedom to Read Committee)가 발표한 『독서의 자유선언』(1972, 1991, 2000, 2004 개정)에는 모든 미국 공동체가 스스로 독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출판과 유통의 자유를 지키는데 힘써야 하며, 출판사와 사서는 다양한 도서에 대한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독서의 자유를 증진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독서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는 권리이며 타인의 취향을 강요하거나 독서를 특정 영역에 국한해서는 안 되며, 특히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이 인생에서 맞게 되는 다양한 경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청소년 스스로 비판적 사유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1999년 ALA 평의회가 채택한 『도서관: 미국의 가치』에서도 도서관은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약속을 함께 제공하며 공익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적자유 원칙을 지켜야 하며, 가능한 폭넓은 범위의 관점, 의견 및 사상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가치를 창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의 도서관 지적자유에 대한 초창기 정의는 ALA의 『도서관관리선언』에 영향을 받은 ‘표현의 자유’와 ‘접근의 자유’에 근거한다. 1954년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으나 선언의 실천을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지 못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아쉬움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1975년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① 선언의 취지 홍보, ②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조사와 연구 진행, ③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원회의 임무로 규정하였다. 이후 도서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적자유 침해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1979년에 개정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개정 내용은 헌법이 정하는 ‘표현의 자유’와 상통하는 개념으로 도서관의 ‘알 자유(知る自由)’를 규정한 것으로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도서관 현장에서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日本図書館協會, 1979). 특히 제2조 (자료제공의 자유)에서 도서관은 ① 인권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시 ② 외설출판물 판결 확정 시 ③ 기증·기탁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자료일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특정 자료를 배제·제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도서관 현장에서 실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 충격적인 소년범죄 발생을 계기로 어린이·청소년으로부터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 규제의 움직임이 일어나자 유해정보(도서 포함)를 배제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요구와 어린이의 정보 입수권이 침해한 대립을 하기도 했다(渡辺重夫, 2001).

〈표 1〉 일본도서관협회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1979 개정)」의 실천조항

구분	내용
<p>제1. 도서관은 자료수집의 자유를 가진다</p>	<p>1. 도서관은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모든 자료요구에 응해야 한다. 2. 도서관은 스스로의 책임하에 작성한 수집방침에 근거하여 자료를 선택하고 수집한다. 이때, (1) 다양하게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관점에 입각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다. (2) 저자의 사상적, 종교적, 당파적 입장에 얽매어 그 저작을 배제하지 않는다. (3) 도서관 직원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취향에 의해 선택하지 않는다. (4)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수집의 자유를 포기하거나, 분류를 우려하여 자기검열을 하지 않는다. (5) 기증자료의 입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도서관이 수집한 자료가 어떠한 사상이나 주장을 내포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도서관 및 도서관 직원이 그것을 지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도서관은 성문화된 수집방침을 공개하여 널리 사회로부터의 비판과 협력을 얻도록 한다.</p>
<p>제2. 도서관은 자료제공의 자유를 가진다.</p>	<p><u>1.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도서관 자료는 원칙적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떤 종류의 자료를 특별 취급하거나 자료의 내용에 손을 대거나 서가에서 배제·폐기하지 않는다. 제공의 자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재검토되어야 한다.</u> (1) 인권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2) 외설출판물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 (3) 기증 또는 기탁 자료 중, 기증자 또는 기탁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미간행 자료 2. 도서관은 미래의 이용에 대비하기 위해 자료를 보존할 책임을 진다. 도서관이 보존하는 자료는 일시적인 사회적 요청,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폐기되지 않는다. 3. 도서관의 집회실 등은 국민의 자주적인 학습과 창조를 지원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가 정리된 장소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은 집회실 등의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단체를 불문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4. 도서관이 기획하는 집회나 행사 등이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p>
<p>제3. 도서관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킨다.</p>	<p>1. 독자가 무엇을 읽는지는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이며, 도서관은 이용자의 독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 제35조에 따라 영장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도서관은 독서기록 이외의 도서관의 이용 사실에 관해서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독서 사실, 이용 사실은 도서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며, 도서관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p>
<p>제4. 도서관은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p>	<p>1. 검열은 권력이 국민의 사상·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써 상용해 온 것으로, 국민의 지적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도서관 검열은 자료 수집에 제약 가하고 수집한 자료를 서가로부터의 배제·폐기하는 것으로 국내외의 고통스러운 역사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 2.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은 검열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도서관은 이러한 사상·언론의 억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3. 이러한 억압은 도서관에서 자기검열을 일으키기 쉽다. 그러나 도서관은 그러한 자기검열에 빠지지 않고 국민의 알 자유를 지켜야 한다.</p>

그리고 영국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의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선언문」(IFLA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1999)에 영향을 받아 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가 「지적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과 검열」(Intellectual Freedom,

Access to Information and Censorship, 2005)을 발표했다. IFLA(1999)와 CILIP(2005)의 선언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적자유는 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9조(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자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에 근거하고 있다. CILIP은 성명서를 통해 도서관 지적자유에 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특히 사서직의 자료선정권과 관련하여 ‘모체기관이 정한 광범위한 정책 범위 내에서 장서개발, 관리, 접근에 대한 전적인 재량권이 사서와 정보전문직의 책임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후 2022년 발표한 「사서 및 정보 전문가를 위한 지적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표현의 자유」(Intellectual Freedom,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for Librarian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에서는 기존 선언문을 발전시켜 지적자유와 사서직의 지적자유를 위한 행동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CILIP, 2022).

그 외에도 캐나다도서관협회(Canadian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의 「지적자유에 관한 입장문」(Intellectual Freedom Position Statement, 1974 채택, 1983, 1985, 2015, 2016, 2019 개정), 네덜란드도서관협회(Netherlands Association of Librarians)의 「공공도서관 사서 헌장」(Professional Charter for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1993), 호주도서관정보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2001)의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 선언」(Free Access to Information Statement, 2001 채택, 2007, 2015, 2018 개정), 스페인문헌정보협회(Spanish Association for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의 「사서·정보전문직 윤리강령」(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2013) 등 여러 국가의 전문가 단체에서 지적자유와 관련한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한국도서관협회가 「도서관인 윤리선언」(2019 개정)에서 이용자에게 차별 없는 정보제공과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식민지 상황, 분단, 독재 등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검서와 검열로 대표되는 사상통제의 역사를 거쳐 왔고, 이에 따라 이른바 이념 서적이라 불리는 도서가 금지되는 등(장덕현, 2011, 176)으로 인하여 지적자유에 관한 논의가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최근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나다움어린이책에 대한 갈등이 불거지자 협회는 2023년 7월에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사실상 국내에서 도서관 지적자유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첫 성명서이다.

요컨대 지적자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도서관 철학의 토대이자 사서직 윤리강령의 핵심 가치로서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개인은 제한 없이 모든 관점에서 정보를 찾고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서직은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제공하며, 검열에 반대하고 사상의 자유를 증진하는 주체로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은 일부 개인과 집단이 전통적

관습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포함한 지식, 상상력, 아이디어 및 의견을 담고 있는 도서관 자료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떤 종류의 자료를 특별 취급하거나 자료의 내용에 손을 대거나 서가에서 배제·폐기하지 않는다. 도서관이 수집한 자료가 어떠한 사상이나 주장을 내포하고 있을지라도 도서관 및 도서관 직원이 그것을 지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나다움어린이책' 검열 논란

여성가족부는 '나다움어린이책 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어린이·청소년 도서를 학교도서관에 배포하였다.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 사회단체 및 민간기업과 3자 협약을 맺어 시작했는데, <표 2>에 정리한 바와 같이 3가지 핵심기준(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에 따른 10개 대주제(주체성, 몸의 이해, 일의 세계, 가족, 사회적 약자, 표현, 혐오 반대, 사회적 인정, 안전, 연대)의 도서를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교사와 아동·청소년 문학가, 평론가, 그림책 작가 등 전문가와 출판사로부터 추천받은 도서 약 1,200여 종을 검토하였으며, 이 가운데 134종을 선정하였다. 해당 도서에는 '나다움어린이책 마크'를 책에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도서관에 '나다움어린이책 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예정이었다(여성가족부, 2019).

<표 2> 여성가족부의 나다움어린이책 선정 기준

기준 질문	범주	핵심가치
인물이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기발견과 성장을 추구하나요?	주체성 몸의 이해 일의 세계	자기긍정
몸의 성장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인물이 성별 차이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나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나요?	가족 사회적 약자 혐오 표현	다양성
사회적 약자의 자기발견과 성장을 편견 없이 보여주나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드러나지는 않나요?		
인물, 상황, 배경의 묘사가 성별 고정관념 없이 다양한가요?	사회적 인정 안전 연대	공존
인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의 기준이 성별 차이 없이 적용되나요?		
어린이에게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알려주고 있나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드러나나요?		

2019년 선정된 나다움어린이책 목록에는 성교육 도서도 포함되었는데,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도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민정희, 2020). 당시 여성가족부는 해당 도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문가들이 추천하거나 권위있는 아동문학상을 수상하였고, 1970년대부터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아동인권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문화적 수용성을 감안하여 회수한다고 설명하였다. 논란이 된 도서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겔스토크」,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핑이」,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우리 가족 인권선언」 등이다.

정부사업은 중단되었지만 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다움북클럽'을 만들어 성평등 어린이·청소년 도서를 추천하는 목록집인 「오늘의 어린이책 1」과 「오늘의 어린이책 2」를 발간하면서 나다움어린이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일부 종교단체와 개인 등이 다시 나다움어린이책을 비롯한 일부 도서를 금서목록으로 만들어 해당 도서를 소장한 도서관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주장의 요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섹슈얼리티' 등의 용어가 배제됐으므로 관련 도서를 열람 제한 및 폐기하라는 것이며, 국민신문고와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민원이 폭주하게 되자 도서관은 일상적인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어느 광역자치단체장은 도의회에서 나다움어린이책 가운데 7종을 도서관에서 열람 제한했다고 보고했고, 또 다른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에 소장된 성교육 도서 중 폐기 처리된 도서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윤근혁, 2023).

2024년 3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학부모단체가 음란 유해 도서로 심의 청구한 11권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도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강수환, 2024).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기구로, 심의대상 간행물은 동법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제1항과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면 유해간행물로 결정된다. 논란이 된 성교육 도서 중 페르 홀름 크누센의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는 1971년 덴마크에서 출간돼 이듬해 덴마크 문화부에서 아동도서상을 수상한 책으로 '덴마크의 지난 100년 역사를 대표하는 100개의 물건'에 선정되기도 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국가자료종합목록(<https://www.nl.go.kr/kolisnet>)에서 해당 도서를 검색하면 248개 공공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도서관은 해당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김대유(2021)는 나다움어린이책에 대하여 일부 종교단체가 외설적이라고 지적한 용어 및 문장이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의 성 단원에 비추어 특별히 선정성이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고, 성교육은 특수한 이익의 도모나 보수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변질될 성격이 아님을 지적했다. 책의 내용은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이나 국제적 상규에 비추어 선정성과 관련이 없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우수한 아동 성교육 자료로 꼽힐만한 요소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임여주(2023)는 이러한 성교육 도서에 대한 선정성 시비의 전 과정은 오히려 삶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을 바라보는 독서 경험의 중요성을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라 평하였다. 성교육 도서는 양육자와 피양육자가 독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에 관해 대화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양육자

가 직접 성교육을 시도하지 않더라도 좋은 성교육 도서를 선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권해 줌으로써 그들이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5년이 지나도록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지속되고 있는 나다움어린이책 검열 논란은 사실상 『도서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국민의 지적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설인 도서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1930년대부터 도서관 지적자유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과 비교하면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많지 않다. 1978년 미국의 『도서관 권리선언』의 번역문이 소개된 이후, 광동철(1986)이 일제강점기 도서검열과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를 다룬 것이 비교적 초기 연구이다.

이후 김혜선(1994)과 손연옥(1996)이 자료선정과 사서의 윤리문제를 다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현태(1999)가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지적자유 침해 사례를 조사하면서 도서관 지적자유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명희(2004)는 한국과 미국에서 금서로 판정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금서로 인정되는 음란물의 헌법적 판정 여부와 판정 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장덕현(2011)은 장서개발에 있어 지적자유에 관한 문제를 현장 사례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서양에서는 외설적 표현 혹은 동성애 이슈 등 내용적 측면에서 학부모에 의한 검열이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도서검열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연구로 이서현(2017)은 미국을 중심으로 금서조치로 인한 지적자유 침해 사례를 분석하였다. ‘금서’ 혹은 ‘도전받은 책’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도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열의 주된 이유는 연령집단이 읽기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성적묘사, 종교적 관점을 반영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경재(2022)는 도서관 장서검열 문제 사례를 4가지(정치, 법률, 선정성, 성범죄) 범주로 유형화하고 사서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서들은 정치·선정성과는 다르게 저자의 성범죄 관련 이슈의 도서에 대한 검열은 검열이 아니라고 답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였다. 이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는 사서직 윤리선언과는 괴리가 있는 현장의 인식으로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국내에서 도서관 지적자유와 관련된 연구는 도서검열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지만,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양상을 깊이 있게 분석한 연구는 수행된 적이 없다. 특히 최근 집중된 검열성 민원으로 사서가 느끼는 압박과 자존감 상실은 향후 도서관서비스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Ⅲ. 최근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조사·분석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의 다양한 행태를 분석하고 현장 사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에 가입된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다만 본 조사는 최근 3년간으로 기간을 한정하고 기관 단위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서관별 대표자 1명이 본 설문에 응답하도록 사전 안내를 거쳤다.

다음으로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표 3>과 같이 6개 영역(인구통계적 특성, 지적자유 침해 형태, (검열)자료,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 도서관별 대응 방법, 지적자유 수호 방안)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기간은 2023년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약 4주간이며, KSDC DB(<https://www.ksdcdb.kr>)의 온라인 설문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표 3> 설문지의 항목구성과 문항수

번호	영역	조사내용	문항수
I	인구통계적 특성	도서관명, 소속 광역자치체, 도서관 관종, 운영주체, 응답자 연락처	5
II	지적자유 침해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 방법 • 침해 횟수 • 침해 주체 • 요구 내용 • 압력의 방식 	5
III	자료(검열 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및 목적 • 검열의 이유 • 검열 자료의 서지사항(e-메일을 통한 추가 제출 방법 안내) 	3
IV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사항 	1
V	도서관별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 방법 • 지적자유 침해 관련 명문화된 규정 보유 여부 • 대응 사례 	3
VI	지적자유 보장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협회·전문가 단체 차원의 대응 방안 • 지적자유 보장 방안 • 기타 의견(개방형) 	3
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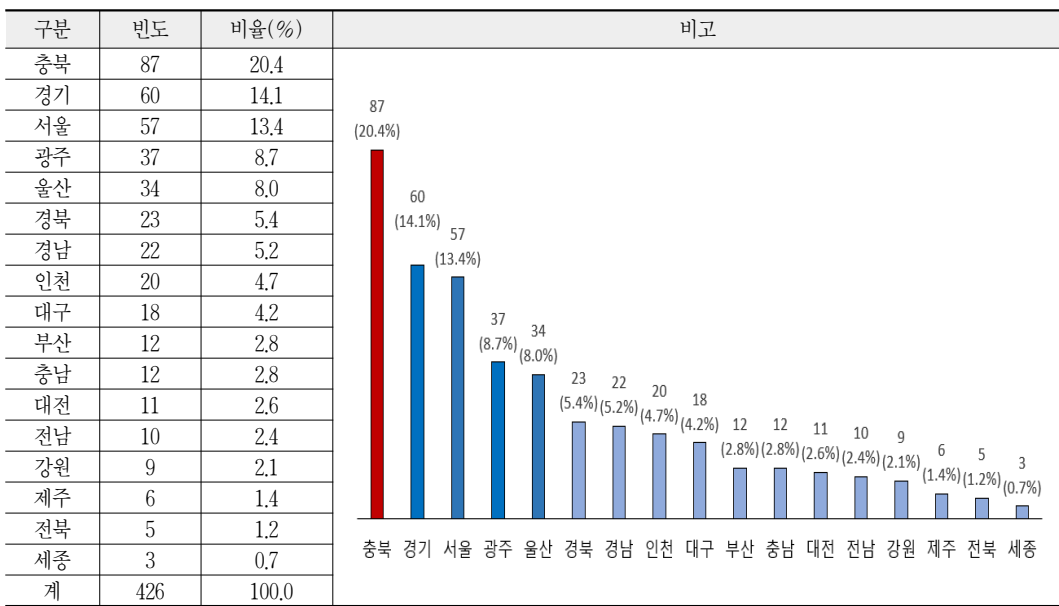
2. 조사결과의 분석

가. 인구 통계적 특성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유효한 총 426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표 4>와 같이 충북(20.4%) > 경기(14.1%) > 서울(13.4%) > 광주(8.7%) > 울산(8.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참여자의 관종별 도서관 분포는 <표 5>와 같이 공공도서관(59.8%) > 학교도서관(34.5%) > 대학도서관(3.1%) 순으로, 이 가운데 공공도서관의 운영 주체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자체(52.2%) > 교육청(31.8%) > 위탁(15.3%) > 사립(0.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소속기관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집중된 이유는 최근 나다움어린이책으로 촉발된 도서관 지적자유 관련 이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4> 응답 기관의 광역지자체별 분포(n=426)



<표 5> 응답 기관의 관종별 분포(n=426)

구분	빈도	비율(%)	비고
공공도서관*	255	59.8	*공공도서관 운영주체별 분포(n=255)
학교도서관	147	34.5	
대학도서관	13	3.1	지자체
전문도서관	2	0.5	교육청
특수도서관	0	0.0	위탁
기타	9	2.1	사립
계	426	100.0	계

나. 지적자유 침해 내용

먼저 지적자유 침해 방법은 <표 6>과 같이 공문 및 성명서를 통한 민원 제기가 36.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게재(10.8%), 홈페이지 건의(10.4%), 전화 민원(9.7%), 상위

기관 요구 및 지시(9.2%), 방문 및 면담(6.4%) 순이다. 그 외에 기타 답변으로 구·시의원 및 교육위원회 등에 의한 자료 소장여부 조사 요청, 시민추진회의 자료 요청, 상위기관 상담 민원 제기, 정보공개청구, 정부민원24 및 도서관 SNS에 민원 제기 등도 있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적자유 침해 횟수는 <표 7>과 같이 1~4건 정도라는 응답 비율이 73.5%로 가장 높았으며, 총 426개관 가운데 85.2%의 도서관에서 지적자유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48회의 민원이 접수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의 일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6> 지적자유 침해 방법(복수 응답)

구분	빈도	비율(%)
공문 및 성명서	209	36.9
해당 없음	63	11.2
국민신문고	61	10.8
홈페이지 건의	59	10.4
전화민원	55	9.7
상위기관 요구 및 지시	52	9.2
방문 및 면담	36	6.4
기타	31	5.4
계	566	100.0

<표 7> 지적자유 침해 횟수(n=426)

구분	빈도	비율(%)
없음	63	14.8
1-4회	313	73.5
5-9회	35	8.3
10-19회	6	1.4
20-49회	3	0.7
50~99회	1	0.2
100회 이상	1	0.2
기타	4	0.9
계	426	100.0

다음으로 지적자유 침해 주체는 <표 8>에 정리한 바와 같이 종교·시민단체, 학부모 연대 등 특정 단체에 의한 침해 비율이 5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21.9%), 상위기관(10.5%)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치인, 타 직렬 결재권자 등 기타 답변도 다수 있었다. 이어서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요구사항은 <표 9>에 보는 바와 같이 자료 폐기(32.5%), 열람 제한(32.3%), 자료 검색 배제 처리(10.3%), 소장처 이관(5.8%), 자료선정위원회·도서관운영위원회 재심의 요구(3.8%), 관리자 책임·징계 요구(2.4%) 등의 순이었다. 다만, 기타 의견으로 '외부 압력으로 인

하여 나다움어린이책을 열람 제한했으나, 해당 자료의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 문의가 있다'는 역민원 사례도 있었다. 사서가 장서관발정책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당 자료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 및 열람 제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의 자료이용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지적자유 침해 주체(복수 응답)

구분	빈도	비율(%)
특정 단체	274	50.4
개인	119	21.9
상위기관	57	10.5
기타	94	17.2
계	544	100.0

〈표 9〉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요구사항(복수 응답)

구분	빈도	비율(%)
자료 폐기	248	32.5
열람 제한	246	32.3
자료검색 배제 처리	79	10.3
소장처 이관	44	5.8
자료선정위원회·도서관운영위원회 재심의 요구	29	3.8
담당 및 관리자 책임·징계 요구	18	2.4
기타	98	12.9
계	762	100.0

한편, 도서관과 직원(사서)에게 가해지는 구체적인 압박은 〈표 10〉에 보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항의성 민원(22.5%), 담당자 문책 요구(7.3%), 도서관 이용 방해(5.4%), 방문 시위(3.3%), 욕설과 협박(2.5%)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기타 의견이 287건(59.3%)이나 수집되었는데, 내용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압박 사례를 유형별(도서관 업무방해, 자료선정권 침해, 심적 부담)로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0〉 도서관과 직원(사서) 대상 압박(복수 응답)

구분	빈도	비율(%)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항의성 민원	109	22.5
담당자 문책 요구	34	7.0
도서관 이용 방해	26	5.4
방문 시위	16	3.3
욕설과 협박	12	2.5
기타	287	59.3
계	484	100.0

〈표 11〉 도서관 및 직원 대상 압박의 유형별 사례(기타 의견)

구분	도서관 업무방해	자료선정권 침해	심적 부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 전화응대로 일반이용자 서비스에 어려움 • 행정절차(민원답변, 도서분리, 심의 등)가 많아짐 • 민원 및 자료 조사 요구에 따른 답변서 제출 과정 • 국민신문고를 통한 도서 처리 요청 및 답변 요구 • 동일 민원의 지속적 제기 및 상담 민원 신청 • 도서목록 검토 및 결과 요구 • 구청 등 상위기관 홈페이지에 민원 조치 및 결정사항 회신 • 국회의원, 시의원 등에 의한 자료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악성민원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 소극적인 자료선정 •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전문가로서 수서를 하는 것이 아닌 유명한 상을 탄 책들만 고려하게 됨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이 불편해하고 의견을 내기 꺼려함 • 구입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지 과정을 감시하겠다는 압력 행사 •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의 기준이 아닌 학부모 단체의 주장을 의원의 의견으로 함께 공문으로 제시하여 도서관 자료선정권을 침해 • 민원 도서 소장여부 조사 요청을 받으면, 도서관에서 먼저 열람 제한했다고 보고함 • 자료 폐기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 발송 및 성명서 발표 등으로 인한 압박감 • 상위기관(지자체) 요구에 불응 시 이에 대한 불이익 우려 •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공문 제출 • 상위기관을 통한 공문 및 민원 제기로 인한 심적 부담 •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도서관에 대한 부정 여론 형성 • 상위기관에 담당자 문책 및 자질 검사 요구 • 상위기관의 반복되는 시정 요청 • 상위기관에 의한 민원인 요구 수용 요청 압박

다. 검열 도서와 검열 목적

검열 도서는 〈표 12〉와 같이 어린이(32.8%) 및 청소년(25.4%) 대상 자료의 비율이 전체 자료의 58.2%를 차지하였다. 일반자료의 경우는 정치·사상(14.9%), 종교(3.6%), 역사(2.7%) 주제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성소수자, 양성평등, 페미니즘 등 이슈(62건)가 많았으며, 그 외에 혐한 도서나 저자의 개인 이력(법 위반, 동성애, 표절, 아동성추행)이 원인이 된 도서도 있었다.

〈표 12〉 검열 도서의 대상 및 주제(복수 응답)

구분	빈도	비율(%)	소계	
어린이 자료	264	32.8	58.2	
청소년 자료	204	25.4		
일반	정치·사상	119	14.9	41.8
	종교	29	3.6	
	역사	22	2.7	
	문학	17	2.1	
	과학	14	1.7	
	예술	8	1.0	
기타	127	15.8		
계	804		100.0	

한편 검열의 목적 및 이유는 〈표 13〉에 보는 바와 같이 선정성(25.2%), 성소수자 이슈(24.3%), 양성평등 이슈(20.5%), 정치·사상적 편향(11.5%), 종교적 편향(4.0%), 폭력성(3.3%), 역사적 편향(3.0%), 과학적 오류(0.4%)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 성교육 도서 삽화의 선정성 및 편향적 성관념(14건), 저자의 범법 행위(3건), 혐한 도서(2건), 민감한 이슈에 따른 상위기관의 지시 등도 있었다.

다음으로 제출받은 검열 도서 목록을 수합한 결과, 나다움어린이책이 213건¹⁾으로 가장 많았으며,

1) 도서관별로 '나다움어린이책' 148권 목록 전체를 제출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도서관도 있어서 구분하지 않음.

그 외 도서는 <표 14>에 정리한 바와 같다. 미국의 경우 2023년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의 76%는 도서검열이었는데, 4,240권의 검열 도서 중 47%는 소수인종·민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A, 2023.4.20.). 장덕현(2011)의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검열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았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본 설문 결과에 따르면 최근 우리도 점차 선정성, 성소수자, 양성평등 이슈 등에 대한 검열성 민원 제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3> 검열의 목적 및 이유(복수 응답)

구분	빈도	비율(%)
선정성	260	25.2
성소수자 이슈	250	24.3
양성평등 이슈	211	20.5
정치·사상적 편향	118	11.5
종교적 편향	41	4.0
폭력성	34	3.3
역사적 편향	31	3.0
과학적 오류	4	0.4
기타	81	7.8
계	1,030	100.0

<표 14> 민원이 제기된 검열 도서 목록

사유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선정성	나다움어린이책(총148권) ※도서관별 일부·전체 목록 제출	-	-	-
동성애	아몬드	손원평	창비	2015
	죽이고 싶은 아이	이꽃님	우리학교	2017
	향구의 사랑	김세희	민음사	2019
역사 왜곡 - 5·18민주화운동 왜곡·편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지만원	시스템	2008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자유북한군인연합	광명기획	2009
	광주, 여성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후마니타스	2012
	역사로서의 5·18, 1-4	김대령	비봉	2013
	임을 위한 행진곡			2015
	5.18 유공자 무용담			2020
	보랏빛호수			2017
	전두환 회고록	전두환	자작나무숲	2017
북한과 한·미·일 정보기관의 기록물로 본 광주사태	김계철	새동아사	2020	
저자의 범법 행위	서연이와 마법의 목걸이	한예찬	가문비어린이	2008
	사랑과평화다, 1-4	정명석	명문	2018
	영감의 시, 1-2		새벽문화	1989
	시의여인		명	2013
정치	평양에서 태양을 보다	윤문영	내인생의책	2018
	반일종족주의와 투쟁	이영훈[외]	미래사	2019
	비극의 탄생	손병관	왕의서재	2021
	동경대전, 1-2	김용옥	통나무	2021
협한 도서	서울증후군	기쿠가와에리카	라이시움	2020

* 그 외 정치인·연론인(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박근혜, 박원순, 박정희, 손석희, 유시민, 윤석열, 이명박, 이승만), 세월호, 새마을운동 관련 도서 보유 현황 조사 요청

라.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은 <표 15>와 같이 자료선정권 침해 및 자기검열에 대한 압박이 25.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료서비스 위축(16.8%), 도서관 일상 업무 방해(16.0%), 전문가적 자존감 상실 및 직원의 사기저하(각, 10.7%), 법적 소송에 대한 불안감(7.5%), 도서관 인지도(위상) 약화(4.1%), 도서관의 범죄 집단화(2.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16>에 정리한 바와 같이 기타 의견으로 직업윤리 침해, 민원 제기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인사 불이익, 감사 조치, 도서 구입 시 상위 결재권자(타직렬)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한 반려, 도서검열과 관련하여 조정·견제를 위한 집단 및 장치 부재, 상위기관(교육청 등)에 대한 해명 및 적절한 대응을 위한 창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표 15>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복수 응답)

구분	빈도	비율(%)
자료선정권 침해 및 자기검열에 대한 압박	322	25.3
자료(대출, 열람) 서비스 위축	214	16.8
도서관 일상 업무 방해	204	16.0
전문가적 자존감 상실	136	10.7
직원의 사기저하	136	10.7
법적 소송에 대한 불안감	94	7.5
도서관 인지도(위상) 약화	52	4.1
도서관의 범죄 집단화	36	2.8
없음	51	4.0
기타	27	2.1
계	1,272	100.0

<표 16>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기타 의견)

구분	기타 의견
응답자 A	•“언급되는 성교육 도서 중 일부는 학교에서 교과연계 도서로도 선정되었으며, 도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자연스럽게 읽히는 자료임에도 선정적이라고 하는 해당 사진만을 부각·편집해서 잘못되었다고 타박하는 행위는 일선에서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서직에게 불편함을 주고 해당 민원에 답하느라 소모되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다”
응답자 B	•“모든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고 어린이들에게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할 의무가 있는 도서관에서 외압에 의해 강서를 제한해야 하는 것에 대해 사서로서 자괴감이 든다. 또한 현안 업무로 바쁜 와중에 해당 자료의 소장 현황을 조사하라는 요구에 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된다”
응답자 C	•“60여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정보공개 청구 등 압박 민원이 있고, 다른 지역의 사례처럼 법적 조치를 감행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지자체 내 위탁기관 및 상위기관을 함께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어 이중고를 겪게 됨”
응답자 D	•“도서검열에 대한 자료 검토나 자료 작성 등으로 일상 업무가 방해되는 것이 어렵고, 또한 자료선정이나 도서추천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위축감이 있음”
응답자 E	•“정치적,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각이 존재할 수 있는데 본인만의 생각을 주장하며 도서관 자료를 폐기하거나 열람 중지를 요구하는 강력한 항의 앞에 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하고 처참함. 도서관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 자료를 선정했다고 답해도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형편없는 평가까지 들어가면서 이를 응대해야 함. 결국 민원이 심할 경우, 해당 자료를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우고 시스템에서도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
응답자 F	•“이미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통과된 자료에 대해서 폐기 및 제거 요청을 하기 때문에 각 도서를 재심의하고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등 업무가 과중되고, 자료선정 시 다시 민원이 들어올 만한 키워드가 있는 도서의 선정을 기피하게 된다.”
응답자 G	•“금년도 8월경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단체 소속의 종교인 다수가 본관에 방문하여 일부 도서의 발췌 부분 및 자체 제작된 리플릿 등을 보여주며 관장(행정직)을 면담함. 이후 관장 지시로 본관, 분관, 작은도서관 등에 소장된 해당 도서의 검색 배제 및 열람 제한, 폐기 조치 등을 지시함.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도서의 비치 여부를 묻는 도의원 요구자료, 감사원 요구자료 등 단시일 내 서류작성 요구 압박 및 불안감을 초래함. 민원 제기에 따른 업무방해 및 행정력 낭비초래 및 내부 직원들 간 이해충돌로 갈등을 초래함.”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양상과 대처방안

구분	기타 의견
응답자 H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도서검열 외에도 일반 이용고객이나 저자가 본인이 원하는 책을 구입하지 않거나 본인이 원치 않는 책을 폐기 또는 열람 제한하지 않으면 장서관발지침을 확인한 후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민원을 넣으며 사서의 수서 전문성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음. 각 도서관별 장서관발지침이 있지만 상이하고 법적효력은 없기 때문에 사서를 보호해주지 못하므로 관련법을 규정하여 검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함”
응답자 I	•“노인인구가 많은 농어촌 도서관으로 도서검열에 따른 큰 애로사항은 없으나 민원이 제기된 도서의 열람 제한을 걸었던 후 이용자가 찾는 경우가 있었음. 며칠 전까지 도서관에 이 책이 있었는데 갑자기 검색이 안된다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 난감한 경우가 있었음”
응답자 J	•“장서관발지침 및 도서선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뚜렷한 도서선정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검열 대상 도서의 판단을 수서 담당자가 떠안고 있는 어려움이 있음. 아직 가해지는 압력은 국민신문고 민원 1회뿐이지만, 향후 타겟이 되었을 경우 벌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음. 또한 장서관발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점에 단체가 요구하는 ‘선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정립에 대한 고민이 깊음”

마.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도서관 대응

지적자유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 도서관의 지침·규정 보유 여부는 <표 17>과 같이 94.8% (404개관)가 ‘없음’으로 답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도서관은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개별 도서관의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응은 <표 18>에 보는 바와 같이 민원 수용(폐기, 열람 제한, 검색 배제 처리, 이관 등)이 2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내 위원회 의뢰(24.2%), 수용불가 처리(22.0%), 상위기관 및 전문가 단체 의뢰(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지적자유 침해와 관련된 개별 도서관의 명문화된 지침·규정 보유 여부(n=426)

구분	빈도	비율(%)
없음	404	94.8
있음	22	5.2
계	426	100.0

<표 18>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개별 도서관 대응(복수 응답)

구분	빈도	비율(%)
민원 수용(폐기, 열람 제한, 검색 배제 처리, 이관 등)	158	26.6
관내 위원회(도서관운영위원회·자료선정위원회 등) 의뢰	144	24.2
수용불가 처리(도서관인 윤리선언 등 국내·외 선언문 근거 제시)	131	22.0
상위기관 및 전문가 단체 의뢰	49	8.2
기타	113	19.0
계	595	100.0

바. 지적자유 보장 방안

도서관 현장에서 바라는 협회·전문가 단체 차원의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처(1순위)는 <표 19>와 같이 관종별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제정이 4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위 행정기관 대응(24.9%), 법적 대응 방안 마련(19.7%), 언론 및 여론 대응(5.6%)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내 도서관계에서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표 20>과 같이 도서관법 및 자치 조례 등 명확한 근거

조항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서관협회·전문가 단체 대응 지침 준수(26.4%), 내부지침 마련(16.4%), 상황별 판단 및 대응(11.8%), 상위기관 위임(10.9%), 민원(이용자 요구) 수용(1.5%)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역민원 제기, 학교도서관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한국도서관협회·전문가 단체와 협의하거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표 19〉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협회·전문가 단체 차원의 대처방안(1순위)

구분	빈도	비율(%)
관종별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제정	207	48.6
상위 행정기관 대응	106	24.9
법적 대응 방안 마련(변호사 선임 등)	84	19.7
언론 및 여론 대응	24	5.6
기타	5	1.2
계	426	100.0

〈표 20〉 향후 도서관계 지적자유 보장 방안(복수 응답)

구분	빈도	비율(%)
도서관법, 자치 조례 등에 근거 조항 추가	289	31.2
한국도서관협회 등 전문가 단체 지침 준수	245	26.4
내부지침 마련	152	16.4
상황별 판단 및 대응	109	11.8
상위기관 위임	101	10.9
민원(이용자 요구) 수용	14	1.5
기타	17	1.8
계	927	100.0

3. 소결 및 시사점

최근 국내 도서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적자유 침해 양상 및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 도서관별 대응과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협회·전문가 단체, 주무부처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의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자유 침해 사례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수집되었으며, 침해 주체는 종교·시민단체, 학부모 연대 등 특정 단체에 의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개인, 상위기관 순이었다. 침해 방법은 공문 및 성명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전화민원, 상위기관 요구 및 지시 순이었으며, 요구사항은 자료 폐기, 열람 제한, 자료검색 배제 처리, 소장처 이관, 재심의 요구, 담당자 책임·징계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항의성 민원 접수, 담당자 문책 요구, 도서관 이용 방해, 욕설과 협박, 방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서관 현장에서는 일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둘째, 최근 3년 동안 검열성 민원이 발생한 도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자료의 비중이 약 58%를 차지하였다. 일반자료는 정치·사상, 종교, 역사, 문학 주제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검열의 목적은 선정성, 성소수자 이슈, 양성평등 이슈, 정치·사상적 편향, 종교적 편향, 폭력성, 역사적 편향, 과학적 오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은 자료선정권 침해 및 자기검열에 대한 압박, 자료 서비스 위축, 도서관 일상 업무 방해, 전문가적 자존감 상실, 직원의 사기저하, 법적 소송에 대한 불안감, 도서관 인지도 약화, 도서관의 범죄 집단화 우려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부분의 도서관은 사실상 지적자유 침해 대응 지침 혹은 규정이 없어서 민원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며, 개별 도서관의 대응 방식은 민원 수용, 관내 위원회 의뢰, 수용불가 처리, 상위기관 및 전문가 단체 의뢰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상황이 복잡·다양한 가운데 협회·전문가 차원의 성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도서관 현장에서 상황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의 작성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

1.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심의·의결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2조(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8호(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근거하여 ‘도서관의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지침’을 심의·의결한 후 관계기관이 수립·적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법적 근거 마련

국내의 도서관협회나 전문가 단체가 채택한 선언문이나 윤리선언에서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없다. 『도서관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권리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서직이 외부 압력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사서직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지적자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2023년 6월 14일 미국 일리노이주는 주 도서관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최초의 도서관검열 금지법인 『Public Act 103-0100』을 제정했다. 미국 전역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성소수자나 소수인종을 주제로 한 도서 때문에 학부모단체로부터 금서 지정 요구 등 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제정된 법으로 그 의의가 크고 국내 도서관계도 참고가 필요하다. <표 21>에 발췌·정리한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주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ALA의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하거나, ‘당파적 입장이나 이념,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 견해 때문에 해당 도서를 금지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을 명문화해야 한다(Illinois Government, 2023). 해당 법을 발의한 주 하원의원은 ‘어린이들에게 독서 가이드가 필요하고 일부 아이디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사회 전체에 단일 표준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법 제정의 배경을 설명하였다(연합뉴스, 2023. 6. 14.).

<표 21> 『Illinois Public Act 103-0100』의 도서관 도서관검열 금지 관련 발췌·요약

구분	내용
내용	<p>sec 1. 주정부는 공교육을 촉진하는 데 재정적인 책임이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모든 수준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공공도서관의 개발을 장려하고 디지털 자원을 포함한 도서관 자원의 공유를 촉진하는 데 있어 모든 유형의 도서관 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것이 주정부의 정책임을 선언한다. 이 정책에 따라 일리노이주 도서관시스템 네트워크의 구축, 운영, 발전을 위한 주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또한 도서관과 도서관시스템이 외부의 압력과 무관하게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자유를 장려하고 보호하며, 도서나 기타 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제거 또는 제한하려는 시도로부터 도서관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임을 선언한다.</p> <p>sec. 3. 주립도서관장과 일리노이 주립도서관 직원은 이 법의 조항을 관리하고 이 법의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의 관리를 위해 주립도서관장이 제정한 규칙과 규정은 다음 기준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p> <p>A.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까지 도서관 시설을 확장하여 주 내 모든 시민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p> <p>B. 모든 교육 수준에서 학생의 요구에 맞는 도서관 자료를 제공한다.</p> <p>C. 주민들의 참고 및 연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도서관 자료를 제공한다.</p> <p>D.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서로 구성된 적절한 직원을 배치한다.</p> <p>E. 당파, 교리적 반대나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 견해 때문에 해당 도서를 금지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는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권리선언을 채택하거나,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 및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특정 도서나 자료를 금지하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도서관이나 도서관시스템에서 도서 또는 기타 자료를 금지하는 행위를 금하는 명문화된 성명서를 개발한다.</p> <p>F. 우리 주의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과 장소, 편리한 도서관 시설을 제공한다.</p> <p>G. 기존 도서관과 신규 도서관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를 충분히 많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시스템을 개발한다.</p> <p>H. 공적자금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한다.</p> <p>I.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지역의 자부심, 책임, 계획 및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 지원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가의 지원을 활용한다. 일리노이주립도서관 자문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모든 문제와 특히 도서관시스템의 형성과 관련하여 사서에 대해 조언하고 권고한다.</p> <p>sec. 8.7. 주 보조금; 도서금지. 주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도서관이나 도서관 시스템은 당파, 교리적 반대 때문에 자료를 금지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권리선언을 채택하거나, 도서관이나 도서관시스템에서 도서 또는 기타 자료를 금지하는 행위를 금하는 명문화된 성명서를 개발해야 한다.</p>

「Public Act 103-0100」 즉, 「도서검열금지법」은 도서관과 일리노이 주민의 ‘독서의 자유’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강조하고, 사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신뢰하여 도서관을 통해 제공될 도서관 자료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검열이 행해지는 일리노이주 도서관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지원을 금지하는 실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검열에 대한 처벌을 위해 법이 작동하기보다는 외부로부터 도서관 자료에 대한 검열 시도를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표 22>와 같이 사안의 심각성과 도서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서관법」 일부 개정을 전제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칭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告示)할 것을 제안한다. 이 지침에는 다음 <표 23>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서관의 중립성을 보장하며, 사서직의 자료선택권 보장과 자기검열을 차단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근거로 작동할 것이다.

<표 22> 「도서관법」 제2조의 ‘지적자유’를 추가한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지적자유,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표 23> 가칭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에 관한 지침’의 목차 구성(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지적자유, 지적자유 침해, 검열 등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제5조 지적자유 보장의 기본원칙 제6조 지적자유 훼손의 판단기준 ① 자료선정과 수집 ② 자료 등 도서관서비스 ③ 도서관의 중립성 ④ 도서관 직원의 자기검열 ⑤ 도서관 이용기록 및 이용자 비밀보호 제7조 지적자유 보장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8조 기타 부칙
--

3. 협회·전문가 단체의 대응체계 마련

미국에서도 여전히 금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지만 ALA OIF는 도서관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1967년 12월 조직된 OIF는 「도서관권리선언」에 구현된 지적자유를 위한 ALA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사무국으로 현재 5명의 전담인력이 배정되어 있다. OIF는 사서와 국민을 대상으로 지적자유와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고려하며, OIF의 주제별 전문가들이 장서개발, 직업윤리, 지적자유, 검열,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필터링, 관련 법률과 정책에 관한 워크숍 진행을 지원한다. 그 외에 도서관 현장에서 발생한 도서관 자료, 프로그램, 정책 및 서비스에 있어 발생한 지적자유 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창구인 'Report Censorship'을 운영하고 있다. 또 매년 '금서주간(Banned Books Week)'을 통해 검열의 해악과 제한 없는 독서의 장점을 알리고, '도전받는 책(challenged book)' 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하며, 해당 도서를 읽고 금서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도서관계를 대표하여 언론을 상대하는 일도 맡고 있다. 그 외에도 「지적자유매뉴얼」(Intellectual Freedom Manual), 「지적자유와 개인정보보호」(Journal of Intellectual Freedom and Privacy) 등 관련 전문자료의 출판을 통하여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기부금 모집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서관협회도 ALA OIF를 벤치마킹하여 지난 2019년 전문위원회인 '도서관지적자유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최근 '지적자유창구'(https://www.kla.kr/kla/bbs/freedom_form.php)를 개설하여 지적자유 침해 사안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부 위촉직으로 주로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 사서,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위원은 각자 현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는 한계가 있다. 지적자유 보장과 관련한 전담팀이 부재한 상황에서 ALA OIF와 같은 대응과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관종별 도서관과 사서직을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로 2022년 말 기준 1,393개 단체와 1,722명의 개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23). 1876년 결성된 ALA의 2019년 기준 회원수는 약 58,000명(ALA, 2020)에 이르고 있어 우리의 상황과는 큰 대비를 이룬다. 도서관 현장 및 사서는 협회·전문가 단체 차원의 지적자유 침해 대응방안으로 관종별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제정(48.6%), 상위 행정기관 대응(24.9%),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19.7%), 언론 및 여론 대응(5.6%) 순으로 희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타 의견도 있었다.

“도서관을 정치적 이념의 도구로 활용하는 단체에 강력한 대응은 개별 도서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도서관계의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협회 차원에서 상위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 응답자 K

“성명서 발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중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언론 대응과 함께 전국 도서관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특정 어느 도서관이 수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민원 및 여론형성을 하기 때문이다.” - 응답자 L

“개별 도서관 차원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구립도서관이 위탁인 상황에선 더욱 협회 혹은 전 도서관인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차원의 성명서, 캠페인, 공청회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받지 않아야 함은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이며 이를 위해 도서관이 굳건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응답자 M

“지자체 도서관의 경우에는 자체 규정이 있더라도 타 시군에서 다른 지침으로 운영된다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위부서 혹은 전문단체의 명확한 규정이 있어 모든 관중에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음.” - 응답자 N

요컨대, 도서관과 사서직을 대변하는 협회가 개별 도서관에서 발생한 지적자유 침해 사안을 위임 받아 내부 전담 인력과 전문위원회 등 인력풀을 활용하여 신속한 사안 검토와 도서관계의 합치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내부조직과 인력 보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전국의 공공, 대학, 전문, 학교도서관 단체와 도서관인의 적극적인 회원가입과 관심의 표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4. 개별 도서관의 대응

개별 도서관은 지적자유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운영 정책 혹은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도서관은 자관의 장서개발정책에 지적자유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자료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책을 유지하되, 사서의 개인적 가치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사서에 의한 자기검열 역시 검열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제별 자료선택이나 의사결정 지침으로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외부의 압력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관 밖의 어느 누구도 자료선정과 수집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음과 독서의 자유, 검열 및 금서의 부당함에 대하여 알리고 지적자유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적법한 기구이므로 민원이 제기된 자료를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원 발생 시 도서관은 민원인에게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선정 지침)에 근거하여 자료를 입수하였음을 고지하되, 민원인(단체)의 도서관 자료에 대한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 다만, 재심의 종결 전까지 해당 자료는 계속해서 다른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앞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는 도서검열뿐만 아니라 매체별 자료와 서비스, 도서관 프로그램과 공간에 이르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서비스와 운영 전반에 도서관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V. 요약 및 결론

올해 초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김혜순 시인의 「날개 환상통」(Phantom Pain Wings)은 전미 도서비평가협회(National Book Critics Circle, NBCC)의 2023년 최고의 책(시 부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ALA는 성소수자 문학에 반대하는 캠페인과 도서검열이라는 외부 압력에 맞서 독서의 자유를 증진하고 도서관 전문가인 사서를 지원하는 사명을 잘 수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NBCC의 토니모리슨상을 수상했다(NBCC, 2024.3.21.). 도서관은 자관의 장서개발정책에 근거하여 「날개 환상통」이나 「젠터 퀴어」²⁾를 수집할 수 있다. 특정 도서를 읽게 할, 혹은 읽지 못 하게 할 권리는 독자 개인과 보호자에게 있으며, 제3자인 타인이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주제의 책을 읽기에 너무 어리더라도 이는 독자와 부모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지 타인이 결정에 관여할 일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근 3년 동안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 행태와 현장 사서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도서 검열로 인하여 일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은 사실상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대응 지침·규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 대처가 불가능하며, 현장 사서는 전문가적 자존감 상실과 사기저하, 법적 소송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지적자유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일원화된 창구의 부재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서는 자기검열에 따른 소극적인 자료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관 장서와 서비스는 어떠한 형태의 이념적, 정치적, 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주체별로 도서관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 도서

2) Maia Kobabe의 「Gender Queer」는 ALA가 ‘전미도서관주간’에 발표한 ‘2023년 가장 도전받은 10대 도서(challenged book)’ 중 1위에 선정되었다. Available: <https://www.ala.org/bbooks/frequentlychallengedbooks/top1>. Maia Kobabe가 2014년 발표한 자전적 소설로 2020년 ALA 알렉스상과 스톤월상을 수상했으나, 많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선정성을 이유로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2023년 한해동안 106회 검열 대상에 올랐다.

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근거하여 '도서관의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지침'을 심의·의결한 후 관계기관이 수립·적용하도록 권고하기를 바란다.

둘째,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법」의 일부 개정을 전제로 가칭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셋째, 도서관과 사서직을 대변하는 한국도서관협회는 지적자유전담팀을 신설하고 '관종별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적자유 침해 사안을 위임받아 내부 인력과 전문위원회인 지적자유위원회 인력풀을 활용하여 법적 대응, 언론(여론) 및 상위 행정기관에 도서관 관계의 합치된 의견을 표명하는 전문가 단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바란다. 다만, 이는 전국의 도서관 단체와 도서관인의 적극적인 회원가입과 관심 표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개별 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에 지적자유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자료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책을 유지하되, 민원이 제기된 자료를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서비스와 운영 전반에 도서관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수환 (2024. 3. 18.). 유해성 논란 도서 '문제없다' 결론에 학부모단체 반발. 연합뉴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8134500063>
- 곽동철 (1986). 일제치하의 도서검열과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대유 (2021). 아동 성교육 도서의 선정성 논란에 대한 고찰: 여가부의 나다움어린이책 선정 사업 시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교육학회지, 7(1), 1-13. <https://doi.org/11.36031/KJHE.7.1>
- 김혜선 (1994). 사서직 윤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美일리노이, 도서검열 도서관에 주정부 지원 없기로 ... 전국 최초.(2023. 6. 14.). 연합뉴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4005300009>
- 민정희 (2020. 8. 31.). 성교육 책 논란되자 회수한 여가부 ... 여성단체 "존재 이유 망각". KBS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529002>
- 배경재 (2022). 지적자유와 도서관 장서검열 문제의 현장 인식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2), 277-294. <https://doi.org/10.4275/KSLIS.2022.56.2.277>
- 손연옥 (1996). 도서관업무와 전문사서간의 윤리적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도서관학논집, 24,

485-515.

여성가족부 (2019. 7. 1.).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기준 마련. 보도자료. 출처: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34

윤근혁 (2023. 11. 11.). 성교육논란도서, 조치하라 ... 경기교육청, 공문논란. 오마이뉴스, 출처:
<https://omn.kr/26dc7>

이명희 (2004).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노력과 금서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5(1), 193-216.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0429535567995.pdf>

이서현 (2017). 미국도서관협회의 '금서주간(Banned Books Week)' PR활동 연구: '도전받은 책(Challenged Books)'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3(4), 187-230.

<https://doi.org/10.21732/skps.2017.80.187>

임여주 (2023).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의 출판과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2), 205-23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1.425>

장덕현 (2011). 장서개발에 있어서 지적자유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1-18.
<https://doi.org/10.16981/kliss.42.1.201103.165>

정현태 (2000). 공공도서관 지적자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39). Library Bill of Rights. Available:

<https://www.ala.org/advocacy/intfreedom/librarybill>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3, March 20). Book Ban Data, Available:

<http://www.ala.org/advocacy/bbooks/book-ban-dat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4, March 4). Censorship by the Numbers. Available:
<http://www.ala.org/advocacy/bbooks/by-the-numbers>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2018). Free Access to Information Statement, Available: <https://read.alia.org.au/alia-free-access-information-statement>

Canadian Librarian Association (2019). Intellectual Freedom Position Statement. Available:
<https://cfla-fcab.ca/en/guidelines-and-position-papers/statement-on-intellectual-freedom-and-libraries/>

CILIP (2005). Intellectual Freedom, Access to Information and Censorship. Available:
<https://www.ifla.org/wp-content/uploads/2019/05/assets/faife/statements/lastat.pdf>

CILIP (2022). Intellectual Freedom,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for Librarian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Available:

- http://www.cilip.org.uk/resource/resmgr/cilip/policy/intellectual_freedom/intellect_free_policy_v1.pdf
- Garnar, Martin (2021). Intellectual Freedom Manual (10th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IFLA (1999). IFLA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handle/123456789/1441>
- Illinois Government. (2023, June 12). Press Release. Gov. Pritzker Signs Bill Making Illinois First State in the Nation to Outlaw Book Bans. Available: <https://www.illinois.gov/news/press-release.26575.html>
- Illinois Public Act 103-0100. Available: <https://www.ilga.gov/legislation/publicacts/103/PDF/103-0100.pdf>
- NBCC (2024, March 21). National Book Critics Circle Announces Finalists for Publishing Year 2023. Available: <https://www.bookcritics.org/2024/01/25/national-book-critics-circle-announces-finalists-for-publishing-year-2023/>
- Netherlands Association of Librarians (1993). Professional Charter for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Available: <https://www.ifla.org/wp-content/uploads/2019/05/assets/faife/codesofethics/netherlands.pdf>
- Spanish Association for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2013).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and Informational Professionals. Available: <https://www.ifla.org/wp-content/uploads/2019/05/assets/faife/codesofethics/spain-nationalcodeofethics.pdf>
- 渡辺重夫 (2001). 図書館と知的自由. 図書館界, 53(3), 191-200. https://doi.org/10.20628/toshokankai.53.3_191
- 日本図書館協會 (1979). 図書館知る自由. 출처: <https://www.jla.or.jp/library/gudeline/tabid/232/Default.aspx>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e, Kyung Jae (2022). A field perception and agenda of intellectual freedom and censorship

- issues in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6(2), 277-294. <https://doi.org/10.4275/KSLIS.2022.56.2.277>
- Chang, Durk Hyun (2011). Intellectual freedom issues in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1-18. <https://doi.org/10.16981/kliss.42.1.201103.165>
- Illinois, U.S., decides not to provide state support to libraries that censor books... first in the country. (2023, June 14). *Yonhap News*, Available: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4005300009>
- Japan Library Association (1979). Declaration on Library Freedom. Available: <https://www.jla.or.jp/library/gudeline/tabid/232/Default.aspx>
- Jung, Hyun Tae (2000). A Study on the Intellectual Freedom in Korean Public Librarie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Kang, Soo-Hwan (2024, March 18). Academic advocacy groups protest against conclusion that 'there is no problem' for books controversial about harmfulness. *Yonhap News*, Available: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8134500063>
- Kim, Dae You (2021). A study on the controversy over the selectivity of children's sex education book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7(1), 1-13. <https://doi.org/11.36031/KJHE.7.1>
- Kim, Hae-Sun (1994). A Study on Ethics of Librarianship.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Kwack, Dong Chul (1986). A Study on Censorship and Intellectual Freedom in Korean Libraries under the Japanese Rul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Lee, Myeong-Hee (2004). Libraries' efforts to preserve intellectual freedom and banned book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5(1), 193-216.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0429535567995.pdf>
- Lee, Seohyeon (2017). A study on PR activities of banned books week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focusing on challenged books. *Studies of Korean Science*, 43(4), 187-230. <https://doi.org/10.21732/skps.2017.80.187>
- Lim, Yeoju (2023). An exploratory study of the publication and use of sexuality education books for youth.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 Science, 34(2), 205-23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1.425>
- Min, Jeong-Hee (2020, August 3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ithdraws after controversy over sex education book... women's group "Forgetting the reason for existence". KBS News. Available: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529002>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9, July 1). Criteria for selecting 'Nadaum Children's Books' that respect diversity and foster gender sensitivity prepared, Press release. Available: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34
- Sohn, Yeon-Ok (1996). A study on the professional ethical relationship between librarian and library work. Annual Review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 485-515.
- Watanabe, Sigeo (2001). Library and intellectual freedom. The Library World, 53(3), 191-200. https://doi.org/10.20628/toshokankai.53.3_191
- Yoon, GeunHyuk (2023, November 11). Sex education controversial book, take action... Gyeonggi Office of Education, official document controversy. OhmyNews. Available:
<https://omn.kr/26dc7>

